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해 양 사 고 의 조 사 및 심 판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,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용어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기관 추가(안 제7조의3제2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('19.7.1)에 따라 주요 사고발생 선박인 어선의 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 전문 인력, 교육연수동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

나. 법률상 용어 및 문구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32조, 제75조, 제76조제1항, 제77조제1항 및 제2항)

표현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('20.2.18)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 문구 수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협의 예정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 중 “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
2.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제32조의 제목 “(심판청구의 통고)”를 “(심판청구의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고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한다.

제75조의 제목 중 “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”를 “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고·통지”를 “통지”로 한다.

제76조제1항 중 “통고·통지”를 “통지”로 한다.

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통고·통지”를 각각 “통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3(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)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”이란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.	제7조의3(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법 제6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”이란 「 <u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</u> 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.	----- ----- --- 다음 각 호의 기관----- ----- -----.
<신설>	1. 「 <u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</u> 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
<신설>	2. 「 <u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</u> 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제32조(<u>심판청구의 통고</u>)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<u>통고하여야</u> 한다.	제32조(<u>심판청구의 통지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알려야</u> -----.
1. ~ 5.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75조(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) ① 해양사고관련자,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통고·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76조(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)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,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·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7조(공시송달) ① 주소를 모르거나 법 제43조제2항·제3항,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통고·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통고·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실는 것으로 통고·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75조(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) ① -----
----- 통지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6조(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) ① -----

----- 통지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7조(공시송달) ① -----

-- 통지 -----
----- 통지 -----

----- 통지 -----

-----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<u>통고·통지</u> 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.	② ----- ----- <u>통</u> <u>지</u> ----- --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조사관	
연 락 처	(044) 200 - 6130